

# 농작물·다년생식물 재배지 이용사실 확인서

(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)
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전화번호		
신청농지	농지 소재지			면적(㎡)	최근 3년간 재배작목		
	읍·면동	리·통	지번		년 월	년 월	년 월

위 토지는 2016.1.21.일 이전부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 형질을 변경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구분	성명	생년월일	날짜	서명
농지소재지○○리(통)장		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		
농지소재지 거주자				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○○지원장·사무소장 귀하

- \* 이(통)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\*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\*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주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\* 형질변경 : 토지의 실제현상이 절토·성토 등을 통하여 임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을 의미하며, 실제 토지현상이 형질변경 되지 않고 수목만 유실수로 갱신한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